

서울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3나200447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전원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피플

담당변호사 성지경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7. 6.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1067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458,118원과 그중 425,107,732원에 대하여는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0,113,286원에 대하여는 2019. 11. 30.부터 2021. 2. 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2면 18행 중 “2009. 5. 4.”를 “2009. 5. 4.경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5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소외 B는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피고를 이용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B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이 사건 리스료 채권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6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서 6면 16행 중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8호증”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6면 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6면 19행부터 21행까지 중 “원고가 ~ 부족하고” 부분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B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거나 이미 설립되어 있는 피고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7면 17행부터 19행까지의 ③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설립될 당시 소외 B가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자본이 부실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외 B가 그 자산과 거래처를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9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⑨ 원고는 소외 B가 채무 면탈을 위해 피고에게 영업자산을 양도하여 피고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소외 B가 피고에게 양도한 영업자산의 종류와 내용, 영업자산의 양도 시기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 제1심 판결서 10면 5행부터 7행까지 중 ① 부분을 “① 소외 B의 일부 직원이 피고로 이직하였거나 소외 B의 감사였던 P이 피고의 대주주인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B의 인적 구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이준영, 판사 최성보